

# 당진 풀림아이원 입주자모집공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당진군 도시건축과 -39341호(2008.9.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9번지 일대                      ■ 대지면적 : 19,677.00㎡
- 공급규모 : 지하 2층, 지상 11~20층 아파트 7개동 총 3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세대(3자녀특별공급 10 세대 포함) 32 세대 포함]

## 공급대상 및 공급내역 (단위 : ㎡)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 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	세대별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층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 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주택	220057-01	2008000779(01)	111.7560	84.9105	26.8455	111.7560	28.6619	140.4179	47.3876	106	14~20
	220057-02	2008000779(02)	116.0220	84.9768	31.0452	116.0220	28.6843	144.7063	47.4246	121	11~20
	220057-03	2008000779(03)	130.6903	99.9341	30.7562	130.6903	33.7331	164.4234	55.7722	106	14~20
	220057-04	2008000779(04)	152.9709	121.2633	31.7076	152.9709	40.9330	193.9039	67.6758	38	20

(단위:천원, VAT 포함)

주택형	공급세대수	층 구분	분양금액			1차계약금 (5%)	2차계약금 (5%)	중도금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111.7560	106	4 1층	40,347	156,653	197,000	9,850	9,850	19,700	19,700	19,700	19,700	19,700	19,700	19,700	59,100
		5 2층	40,347	159,453	199,800	9,990	9,990	19,980	19,980	19,980	19,980	19,980	19,980	19,980	59,940
		60 3층~12층	40,347	163,253	203,600	10,180	10,180	20,360	20,360	20,360	20,360	20,360	20,360	20,360	61,080
		37 13층~최상층	40,347	166,453	206,800	10,340	10,340	20,680	20,680	20,680	20,680	20,680	20,680	20,680	62,040
116.0220	121	6 1층	40,378	162,022	202,400	10,120	10,120	20,240	20,240	20,240	20,240	20,240	20,240	20,240	60,720
		8 2층	40,378	164,822	205,200	10,260	10,260	20,520	20,520	20,520	20,520	20,520	20,520	20,520	61,560
		78 3층~12층	40,378	168,822	209,200	10,460	10,460	20,920	20,920	20,920	20,920	20,920	20,920	20,920	62,760
		29 13층~최상층	40,378	172,622	213,000	10,650	10,650	21,300	21,300	21,300	21,300	21,300	21,300	21,300	63,900
130.6903	106	5 1층	47,486	188,514	236,000	11,800	11,800	23,600	23,600	23,600	23,600	23,600	23,600	23,600	70,800
		6 2층	47,486	192,314	239,800	11,990	11,990	23,980	23,980	23,980	23,980	23,980	23,980	23,980	71,940
		60 3층~12층	47,486	198,114	245,600	12,280	12,280	24,560	24,560	24,560	24,560	24,560	24,560	24,560	73,680
		35 13층~최상층	47,486	201,914	249,400	12,470	12,470	24,940	24,940	24,940	24,940	24,940	24,940	24,940	74,820
152.9709	38	1 1층	57,621	221,879	279,500	13,975	13,975	27,950	27,950	27,950	27,950	27,950	27,950	27,950	83,850
		1 2층	57,621	225,879	283,500	14,175	14,175	28,350	28,350	28,350	28,350	28,350	28,350	28,350	85,050
		20 3층~12층	57,621	230,379	288,000	14,400	14,4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86,400
		16 13층~최상층	57,621	234,379	292,000	14,600	14,600	29,200	29,200	29,200	29,200	29,200	29,200	29,200	87,600

### ■ 청약시 유의사항

-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38조 2의 규정에 따라 주택형별 상한제 총금액을 기준으로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 상기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며, 본 주택의 당첨자[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원전원 포함]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전용면적 85㎡이하주택은 5년간 전용면적 85㎡초과주택은 3년간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 \* 당 아파트는 2007년9월1일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 \* 상기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계약을 해야함.

-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일자 는 감리자의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이어야 함)
-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 세대별 대지비율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한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단지 주변 주민기피시설로 당 아파트의 남측 590m 반경에 돈사농장(돼지 2000여두) 있음.
- \* 청약신청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무주택세대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 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에 청약자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전적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각사 및 은행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공급금액과 채권매입상한액은 별개이며, 본 주택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 시행지침에 의거 산정한 결과 채권매입상한액이 0원임.

##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1. 3자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 9 .19.) 현재 충청남도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의 직계자녀를 3명이상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예금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재당첨금지 적용자는 제외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급세대: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비율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음.
  - 일반 공급 371세대 중 3%인 10세대(전주택형)

주택형	111.7560㎡	116.0220㎡	130.6903㎡	152.9709㎡	합 계
공급세대	3	3	3	1	10

- \* 선정방법 :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급물량의 3%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선정.
- \* 공급기준 :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해당사 견본주택 방문 신청순
-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09.23(화) (10:00~15:00), 당사 견본주택
- \* 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09.23(화) (15:30), 당사 견본주택
-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 중복 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으로 신청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3자녀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
  - 추후 부적격처리된 특별공급주택은 우선순위배점표 상의 차순위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 3자녀 특별공급시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 아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의 상이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우선순위 배점표

퍼점요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채 다 사 하
------	-----	---------	---------

구분		인원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 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이상 ~ 10년 미만	15	
			1년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 (1),(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확인원으로 확인, (3) : 국토해양부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대상자 구비서류

- ① 특별공급신청서 (견본주택에 비치)
- ② 주민등록등본1통 (본인의 주민등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③ 주민등록초본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충청남도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④ 가족관계증명서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⑤ 배점기준표(견본주택에 비치)
- ⑥ 장애인등록증사본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⑦ 무주택 서약서(견본주택에 비치) ⑧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⑨ 인감 도장, 인감증명서(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⑩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변동 내역 표시 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 09. 19.)현재 당진군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단체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시는 분.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공급세대

주택형(타입)	111.7560㎡	116.0220㎡	합 계
공 급 세 대	10	12	22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비율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음.  
- 전용면적 85㎡이하 일반공급 세대의 10% 범위 22세대

\* 공급기준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09.23(화) (10:00~15:00), 당사 견본주택

\* 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09.23(화) (15:30), 당사 견본주택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대상자 구비서류

- ①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8.09.19.)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중 1통]

② 주민등록증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전,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

⑤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및 인정서(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인정증명서"-장애인인정증명서는 군청에서 발급 가능)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인정서만 인정함[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⑥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신청서(건본주택 비치) ⑦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으로 신청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우선선정함.

[단,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과 85㎡이하 특별공급 대상이 모두 미달일 경우에는 동시 추첨함]

### 3. 일반공급

#### 1)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09.19)현재 당진군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중복청약시 발표일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하며,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 계좌 재사용이 불가능함

\* 당진군 주택건설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당진군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당진군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1순위 주택당첨자중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2)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거주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 자격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당진군 (3자녀 무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충청남도)	1순위	특별공급/ 3자녀 특별공급	* 위 특별공급 또는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비자	2008.9.23	당사 건본주택 (10:00~15:00)	당사 건본주택 (2008.9.23.)
			공통	* 가점제 대상자 :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 분 * 추첨제 대상자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2008.9.24	* 접수장소 - 국민은행 청약 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2you.com  - 아래의 청약 신청 안내참조	* 일시 : 2008.10.2  * 장소 : 당사 건본주 택 및 홈페이지
			85㎡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85㎡~102㎡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범위내에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85㎡~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980. 8. 29.이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1981. 5. 22.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제1순위자 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 예금에 예치 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 (85㎡ 초과 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 이상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거주가능)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참조)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바람)
	2순위	공통	* 가점제 대상자 : 2순위 청약자 전원 * 추첨제 대상자 : 해당사항 없음.(별도 추첨제 신청자격 없음)	2008.9.25	* 접수시간 - 08:30~18:00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 이 85㎡ 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3순위	전주택형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2008.9.26	* 접수장소 : - 농협중앙회 본지점 * 접수시간 : - 9:30~16:30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확인원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 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우, 창구청약 가능시간 : 09:30~16:3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의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하단 '가점제 안내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3) 1순위 청약제한 대상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2002.09.05. 가입자 포함)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4) 경과기간 및 요건

-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
-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기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해야 함.
  - 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 면적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후 면적만 신청가능(단, 1년미만인 자는 변경전 면적만 청약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 청약가점제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1에 의거 일반공급 세대수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75%, 85㎡초과의 50%를 우선 공급함.

\* 가점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제의 공급기준

구 분		민간택지 / 민영주택	
85㎡ 이하 주택	저축종류	청약예·부금	
	청약방법	가점제	추첨제

	공급세대 비율	75%	25%
85㎡ 초과 주택	저축종류	청약예·부금	
	청약방법	가점제	추첨제
	공급세대 비율	50%	50%
공통사항		<p>* 각 주택형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순위를 취득한 자.</p> <p>* 가점제 신청분 중 가점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p>	

\* 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일반기준	<p>*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아래의 "감점기준표"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p> <p>*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한다.</p>
------	----------------------------------------------------------------------------------------------------------------------------------------------------------------------------------------------------------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가입자 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④ 감점		<p>* 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처리됨</p> <p>*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처리됨</p>			
청약가점 점수	(① + ② + ③) - ④				

\* 가점제의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 소형, 저가주택"이라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이상 계속 소유(소형,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후</p>

<b>무주택기간 적용기준</b>	<p>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한다)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p> <p>*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 일자가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b>부양가족의 인정기준</b>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자녀에 한함)을 말한다]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p> <p>*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에만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60세이상 직계 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한다.</p> <p>*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본다.</p>
<b>청약저축 가입기간</b>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 ■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1. 신청기준

- \* 공통: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청약순위에 따른 일정으로 구분하여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는 접수하지 않음.)
- \* 1.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가점제 청약접수를 원칙[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 추천제)선택 불가하며 가점제로 자동 청약접수함]으로 하며, 가점제 입주자선정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천제 대상자로 전환함.  
(단,1순위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천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접수 함)
- \*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가 전원 추천제로 청약접수 함.

#### 2. 인터넷 . ARS 신청접수

-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상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 용 대 상	공 통	* 1·2순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현재 해당순위가 발생한 분	
	인 터 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분	
이 용 방 법 및 절 차	인 터 넷	*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3. 노약자 . 장애우 등 창구 접수

구 분	구 비 사 항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농협중앙회 비치)



일반공급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1,2순위자에 한함)</li> <li>- 예금인장(1,2순위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li> <li>-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주민등록등, 초본 등(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li> <li>-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li> <li>- 주민등록등본 1부</li> </ul>
	제3자 대리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대리신청자 (직계,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 나 이에 관한 공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li> <li>-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li> <li>- 청약자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4. 3순위 청약 신청 및 환불

##### \* 청약신청금

구 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신청금 납부방법
청약신청금	100만원	200만원	창구 청약시 가능한 한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당진군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 이후 평일 09:30 ~ 16:30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농협 본·지점(단, 청약자 본인의 해당은행 지정계좌로 이체 신청한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됨)

\* 환불대상 : 3순위 청약자 (당첨자 포함)

\* 구비서류 : ①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② 주민등록증

③ 신청서 사용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①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 단,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② 인감도장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③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④ 위임장

\* 제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농협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를 결정함</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li> <li>*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li> </ul>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순위에서 가점제(가장점수가 높은순)로 입주자를 선정한 후,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단, 1순위자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li> <li>*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li> <li>*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형별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해 예비당첨자를 선정 (3순위까지)</li> </ul>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 인터넷 ·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 서비스이므로 반드시 당첨자발표 장소 등에서 당첨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인터넷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부동산 →분양관→사이버청약지점→당첨확인→주택별 조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접속→ 청약센터→당첨자조회
	이용기간	* 2008. 10. 02. ~ 2008. 10. 11. ( 10 일간)	
ARS	전화번호	☎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번호 : 701)	-
	이용기간 및 시간	* 2008. 10. 02. ~ 2008. 10. 11. ( 10 일간)	
휴대폰 문자 서비스	대상	*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분 중 당첨자	-
	제공일시	* 제공일시 : 2008.10.02.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 ■ 계약체결절차 및 유의사항

#### 1.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 \* 계약체결일시(정당 당첨자) : 2008. 10. 8 ~ 2008. 10. 10 (3일간, 시간 : 10:00 ~ 16:30)
-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지정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견본주택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요망)
-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한하여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농협중앙회 본 · 지점 무통장 입금(타행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지정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2. 계약시 구비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제출생략)</li> <li>* 계약자의 인감도장</li> <li>*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li> <li>*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20세 이상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1통,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li> <li>- 호적등본 1통(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재외통보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1통),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1부(장애인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li> <li>* 계약금(당진군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li> </ul>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특별공급 및 수요자별 주택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li> <li>-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li> </ul> </li> </ul>

<b>1순위사 중 해당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li> <li>-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b>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제출</li> <li>-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li> <li>-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li> <li>-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li> </ul>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3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3.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을 허위 또는 착오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1·2·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이미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금융결제원 에 5년 이내 재당첨여부검색하고 특별공급 및 1순위자 (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국토해양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로 판명함
-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번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 아파트의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적용함.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적용됨.

### 4. 계약금 납부 계좌 및 방법

구 분	납부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전 주택형	농협협동조합중앙회	083-17-032345	(주)대희디앤씨, (주)풍림산업(주)

\* 납부 방법 : 계약금 입금 계좌로 입금 후 입금표 지참

###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기준으로 함.
-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4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검사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할 경우
  - 4)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주택 소유자는 제외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7)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입주자 사전점검**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입주예정일 : 2010년 10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문고시설,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등

**■ 대출안내**

-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용자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분양대금의 일부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을 시행할 예정임.
- \* 단,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 사정에 의해 중도금대출이 불가한 분은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체일시에 대하여 별도의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금액 안내**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확장위치	기본금액	확장공사비	본인부담	비고
111.7560	침실1, 침실2, 거실, 주방/식당	5,660,000	15,710,000	10,050,000	
116.0220	침실1, 침실2, 거실, 주방/식당	5,530,000	14,300,000	8,770,000	
130.6903	안방, 침실1, 침실2, 거실, 주방/식당	7,000,000	17,150,000	10,150,000	
152.9709	안방, 침실1, 침실2, 거실, 주방/식당	7,150,000	18,430,000	11,280,000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두께, 세대간 마감등이 상이할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추가되어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될 수 있음.
- \*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 \* 상기금액은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공사비용으로 분양금액과 별개임.
-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질, 품귀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람.

###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기본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창호, 가구, 주방용품, 평면계획, 발코니확장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1	가구	화장대, 드레스룸가구, 침실불박이장, 신발장, 복도수납장	
2	주방가구 외	주방가구 및 기구(수전,퓌벨브 포함), 벽타일	소방관련후드,상부장1칸
3	조명기구	조명기구(욕실 조명기구 제외)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등)
4	바닥재	강화마루, 걸레받이	바닥 난방, 현관바닥 타일,현관디딤판(천연대리석), 발코니 바닥타일(실외기실,대피공간 포함)
5	벽, 천정마감	벽지, 천정지, 아트월, 반자돌림	콘크리트 벽체 위 부직포 마감 또는 석고보드 마감,천정을 위 석고보드 마감, 우물천정,발코니 벽, 천정 도장
6	창호	목문짝(침실문, 욕실문, 포켓도어,하드웨어 포함) 문틀(상부덧판,문선 포함)	가틀(샤츨 및 욕실문 하부셀 포함),발코니PL창호 발코니외부샤시,세대 현관방화문 및 하드웨어 일체, 소방관련 방화문 및 하드웨어 일체
7	욕실 마감	욕신타일, 천정재, 샤워부스, 욕실장, 위생기구(욕조, 세면기, 양변기,샤워기,수전,각종 액세서리 등), 조명기구	조적, 방수, 미장, 설비 배관, 전기 배관/배선

### ■ 마이너스 옵션 기본선택품목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111.7560m <sup>2</sup>	116.0220m <sup>2</sup>	130.6903m <sup>2</sup>	152.9709m <sup>2</sup>	비고
금액	21,200,000	22,000,000	25,600,000	28,000,000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미포함 됨

\*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설치하려는 자는 일반 당첨자 발표일 이후 3일이내, 당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약삭서를 받고 신청하여야 한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 사항

- \* 기본형 계약이후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거나 선택한 품목을 변경할 경우 2009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그 이후는 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 또는 사업주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을 사업주체가 시공하지 않는 경우, 입주 예정자께서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계약서에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 주택공급신청서상에 청약자가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종전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단, 접수 당일 접수시간 내에 한하여 취소 가능)
- \* 입주자로 선정(3순위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 이 아파트는 실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시에는 해당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됨.
-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불가자는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 \* 하자 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후 철거전에 사진 및 비디오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정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건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동시 공급가격에 의해 정산 처리함.  
(단,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 하지 않기로 함)
-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계획은 당진군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단지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외 별도로 구획을 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관리 사무소 입구 게시판 및 각 공동주택 출입문에 공고할 예정임.

-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내 시설물의 변경, 향·층에 따라 일조권, 환경권,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 주민공동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 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운영하여야 함.
-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학교용지분담금은 분양금액×4/1,000로서 사업주체가 납부할 사항임.
-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택지비에 대한 감정평가

감정평가기관	평가금액	비고
한국감정원	783,000원 /㎡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769,000원 /㎡	

■ 주택성능등급인정서(대한주택공사에서 인정)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소음관련등급	경량충격음		4 등급
	중량충격음		4 등급
	화장실소음		2 등급
	경계소음		2 등급
구조관련등급	가변성		4 등급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전용부분	4 등급
		공용부분	4 등급
내구성		3 등급	
환경관련등급	조경(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4 등급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4 등급
	일조(빛환경)		3 등급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	1 등급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2 등급
에너지성능(열환경)		3 등급	
생활환경등급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1 등급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배려	전용부분	3 등급
		공용부분	3 등급
화재.소방등급	화재.소방	화재감지 및 경보 설비	3 등급
		배연 및 피난 설비	3 등급
		내화 성능	3 등급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단위:원, VAT별도)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건축감리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833,007,956	
전기감리	㈜청우엔지니어링	306,485,734	
소방감리	진화엔지니어링㈜	55,000,000	
통신감리	삼산기술단	42,000,000	

■ 주택분양보증인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등기일(사용검사 포함) 까지	87,476,300,000	제01292008-101-0002300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 1) 천재지변,전쟁,내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 계약을 이행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차명,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3) 입주자 모집공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5) 보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 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할 입주금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품목(예시:흡오토,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자재공사등)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 7조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제4호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 행 사	시 공 사
상 호	(주)대히디앤씨	풍림산업(주)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19-6 광성빌딩 2층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번지
등록번호	110111-3675654	110111-0031908

■ 견본주택위치: 총남 당진군 당진읍 수청리 442-5 분양문의 ☎ 041-353-0020

■ 본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